

(주)트리니티항공 정관

2003년 05월 19일 제정
2004년 02월 16일 개정
2004년 05월 25일 개정
2006년 03월 22일 개정
2007년 03월 30일 개정
2009년 03월 31일 개정
2010년 03월 08일 개정
2010년 08월 13일 개정
2010년 11월 18일 개정
2012년 09월 26일 개정
2013년 03월 15일 개정
2015년 03월 20일 개정
2016년 03월 18일 개정
2017년 12월 26일 개정
2018년 03월 30일 개정
2019년 03월 29일 개정
2021년 03월 31일 개정
2023년 03월 31일 개정
2024년 03월 29일 개정
2025년 09월 15일 개정
2026년 03월 31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트리니티항공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Trinity Airways Co., Ltd. 라 표기한다. (본 조 개정 26.03.31)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국내외항공운송업 (개정 10.11.18)
2.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개정 06.03.22)
3. 항공기 취급업 (개정 06.03.22)
4. 항공기 기내의 식품제조·판매 및 물품판매업 (개정 10.11.18)

5. 창고업 (개정 06.03.22)
6. 항공에 관련되는 의료업 (개정 06.03.22)
7. 정보처리, 정보검색 및 정보통신 관련업무의 개발, 판매 등의 기술용역업, 부가통신사업, 특정 통신사업 및 대리점업 (변경 07.03.30)
8. 상품판매업 (개정 06.03.22)
9. 일반창고 및 보세창고업 (개정 06.03.22)
10. 보세 및 비보세 창고업을 영위하는 행위 (개정 06.03.22)
11. 여행업 (개정 04.02.16)
12. (삭제 10.11.18)
13. 관광사업 (개정 07.03.30)
14. 수출입업 (개정 07.03.30)
15. 면세물품 및 토산품 판매업 (개정 07.03.30)
16. 무역대리점업 (개정 07.03.30)
17. 통신판매업 (개정 07.03.30)
18. 항공기 및 기기류의 수리개조 및 재생사업 (개정 07.03.30)
19. 항공기사용사업 (개정 07.03.30)
20. 복합운송주선업 (개정 07.03.30)
21. 식품접객 및 조리판매업 (개정 07.03.30)
22. 신용판매업 (개정 07.03.30)
23. 여행상품 판매업 (개정 07.03.30)
24. 운송대리점업 (개정 07.03.30)
25. 임대업 (항공기, 부동산, 운수장비, 운수부대장비 및 전산통신장비 등) (개정 07.03.30)
26. E-business업 (개정 07.03.30)
27. 교육사업 (개정 07.03.30)
28. 경영컨설팅 및 기타투자관련업 (개정 10.03.08)
29. 'HOTEL'업 (신설 10.11.18)
30. 리무진버스사업 (신설 10.11.18)
31. 문화사업 (신설 10.11.18)
32. 관광편의 시설업 (신설 10.11.18)
33. 유람선 운항사업 (신설 10.11.18)
34. 벤처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신설 10.11.18)
35. 농수산물의 가공 및 판매업 (신설 10.11.18)
36. 콘도미니엄 및 종합 레저 시설업 (신설 10.11.18)
37. 항공에 관련되는 위탁업 및 대리업 (신설 10.11.18)
38. 종합관광업 및 운동시설 운영업 (신설 10.11.18)
39. 통관업 (신설 10.11.18)
40. 물품포장업 (신설 10.11.18)
41. 전자상거래업 (신설 10.11.18)
42. 항공기내 면세품 판매업 (신설 15.03.20)

43. 준비된 식사와 면세품과 관련 용역을 항공기에 공급하고 인도하는 행위 (신설 15.03.20)
44. 공중을 위한 일반급식(케이atering)업을 영위하는 행위 (신설 15.03.20)
45. 공항식당 및 관련 시설을 영위하는 행위 (신설 15.03.20)
46. 항공기 정비업 (신설 15.03.20)
47. 항공기를 이용한 자원조사 및 각종 기술용역업 (신설 15.03.20)
48. 외식업 (신설 15.03.20)
49. 식품 도.소매업 (신설 15.03.20)
50. 음식료품 및 선물용품 판매업 (신설 15.03.20)
51. 음식점업 및 관련컨설팅사업 (신설 15.03.20)
52. 커피 및 음료 제조 서비스 및 도.소매업 (신설 15.03.20)
53. 기타 식료품 제조업 (신설 15.03.20)
54. 광고업 (신설 16.03.18)
55. 옥외광고업 (신설 16.03.18)
56. 기간통신사업 (신설 24.03.29)
57. 각호의 부대되는 사업일체 (개정 16.03.18)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는 본점을 대구광역시에 둔다. (개정 23.03.31)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개정 09.03.31)

제4조(공고방법)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twayair.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개정 26.03.31)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십억주로 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5조의2(설립 시에 발생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일백만주(1주의 금액 오백원 기준)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일백원으로 한다. (개정 25.09.15)

제7조(주식의 종류)

-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개정 17.12.26)
- ② 본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분항 신설 21.03.31)

제7조의2(이익배당우선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일정한 비율로 보통주식에 우선적으로 배당하는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1% 이상 1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 ③ 본 회사가 발행할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해서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⑤ 이익배당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내의 범위 내에서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7조의3(전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전환주식"이라 함)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전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원칙적으로 전환전의 수와 동수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 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환비율 및 전환비율 조정 등 전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전환주식의 발행 시 정한 바에 따라 보통주식 또는 종류주식으로 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7조의4(상환주식)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범위에서 이익으로 소각할 수 있는 종류주식(이하 이조에서는 "상환주식"이라 함)으로 발행할 수 있다.
- ② 본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상환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

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 ③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회사의 선택에 따라 상환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상환주식을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다만,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천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회사는 상환대상인 주식의 취득일 2주일 전에 그 사실을 그 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상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연 1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 가산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조정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2. 상환청구기간은 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익일부터 발행 후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대한 정기주주총회 종료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상환청구기간은 연장된다.
가. 상환청구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나. 우선적 배당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3. 주주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이를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에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할상환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천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고, 안분비례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4. 상환청구주주는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본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 외의 유가증권이나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1.03.31)

제8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본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본조 개정 19.03.29)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4. 직원의 동기부여 및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리사주조합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한 자에게 신주를 부여하는 방식
-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9조의2(일반공모증자 등)

- ① (삭제 09.03.31)
- ② (삭제 09.03.31)
- ③ (삭제 09.03.31)
- ④ (삭제 09.03.31)

제9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① 본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8.03.30)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09.03.31)
-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개정 10.11.18)
-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0.11.18)
-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09.03.31)
 -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개정 09.03.31)
 -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날로부터 8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⑨ (삭제) (본조 개정 21.03.31)

제9조의4(동등배당)

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9조의5(이익소각)

- ① 삭제 (개정 10.11.18)
- ② 삭제 (개정 10.11.18)

제10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 규정에 따른다. (본조 개정 21.03.31)

제10조의2(주주명부 작성·비치)

- ① 본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1.03.21)

제11조(기준일)

본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3장 사 채

제12조(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조 개정 26.03.31)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1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본조 개정 26.03.31)
-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

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개정 19.03.29)
- ⑥ (삭제) (본조 개정 21.03.31)

제14조(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 개정 21.03.31)

제15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0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 개정 19.03.29)

제4장 주 주 총 회

제16조(소집시기)

- ① 본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제11조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본조 개정 21.03.31)

제17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09.03.31)
-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7.12.26)

- ③ 본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09.03.31)
- ④ (삭제 17.12.26)

제19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19.03.29)

제21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기타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의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3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본조 개정 17.12.26)

제24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본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5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삭제 (개정 10.03.08)

제5장 이사 이사회

제29조(이사의 수)

- ① 본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다.
- ② 독립이사는 이사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③ 독립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독립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30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 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개정 13.03.15)

제32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

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독립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0.11.18)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선임한다. (개정 10.03.08)

제34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개정 19.03.29)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8.03.30)

제35조(이사회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이사회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7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이사회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회의 소집권자를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36조(이사회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개정 17.12.26)
- ② 이사회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3.03.15)
- ③ 이사회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7.12.26)

제37조(이사회 의 의사록)

- ① 이사회 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8.03.30)

제38조(위원회)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39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10.03.08)
- ② 이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③ (개정 10.03.08)
- ④ 삭제 (개정 10.03.08)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1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8조 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독립이사이어야 하고, 독립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 의 10 제2항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독립이사이어야 한다.
- ⑤ 독립이사 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독립이사 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⑦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독립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 개정 26.03.31)

제42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는 본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개정 19.03.29)
- ⑦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⑧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 ⑨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본조 개정 18.03.30)

제43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18.03.30)

제 7 장 계 산

제44조(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5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03.30)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개정 13.03.15)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8.03.30)
- ④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3.03.15)
- ⑤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13.03.15)

제46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19.03.29)

제47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8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삭제 (개정 21.03.31)

- ③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4.03.29)

제49조(중간배당)

- ①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개정 17.12.26)
- ②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4.03.29)
- ③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 ④ 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중간배당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중간배당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 ⑤ (삭제) (개정 21.03.31)

제50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본 회사에 귀속한다.

보 칙

제1조(세척내규)

본 회사는 필요에 응하여 이사회 결의로서 업무추진 및 경영상 필요한 세척내규로 결정할 수 있다.

제2조(퇴직금 지급 기준)

임직원 퇴직금 지급기준은 별도 정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제3조(규정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및 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제2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03월 31일